

통보번호	CP11
세무연도	2009 년
통보일자	2011 년 2 월 9 일
사회보장 번호	999-99-9999
문의처	전화 1-800-829-0922
발신자 ID	1234
페이지 1/5	

s018999546711s JAMES & KAREN Q. HINDS 22 BOULDER STREET HANSON, CT 00000-7253

귀하의 2009년 1040 양식에 대한 변경사항

납부해야 할 세액: \$986.46

귀하의 2009년 1040 양식에서 다음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계산상의 오류가 있었다고 사료됩니다.

- 납세자 구분
- 부양 가족
- 근로소득 세액 공제

이러한 오류를 정정하여 귀하의 세금보고서를 수정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 귀하가 납부해야 할 세액은 \$986.46 입니다.

세액계산 요약	_
납부해야 할 세액	\$2,894.00
납부한 세액	- 2,140.00
미신고 과태료	188.50
이자 가산금	43.96
2011 년 3 월 2 일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	\$986.46

귀하가 즉시 취해야 할 조치

본 통지서를 검토하시고, 귀하의 세금 보고서 상의 내용에 대한 IRS의 변경 사항을 비교하여 주십시오.

IRS의 변경 사항에 동의할 경우

추가 벌금 및 이자 가산금의 부과를 피하시려면 납부해야

뒷 면에 계속...

할 세액 \$986.46를 2011년 3월 2일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.



납부

James & Karen Q. Hinds 동보면 22 Boulder Street 동보면 Hanson, CT 00000-7253

통보번호	CP11		
통보일자	2011년 2월 9일		
사회보장 번호	999-99-9999		

- ▶ 귀하의 수표 또는 소액환을 미국 재무성 (U. S. Treasury) 앞으로 발행하여 주십시오.
- 귀하의 지불 수단 및 모든 관련 통신문에 귀하의 사회보장번호 (999-99-999), 세무연도 (2009) 및 양식 번호 (1040)를 기재하여 주십시오.

2011년 3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

\$986.46

INTERNAL REVENUE SERVICE KANSAS CITY, MMO 64999-0010 s018999546711s

통보번호	CP11
세무연도	2009 년
통보일자	2011년 2월 9일
사회보장 번호	999-99-9999
페이지 2/5	

IRS 의 변경 사항에 동의할 경우—계속

- 납부 세액을 완납할 수 없는 경우, 납부 가능한 최대 금액을 지금 납부하시고, 남은 금액은 추후에 귀하에게 완불을 허용하는 지불협의를 하십시오. www.irs.gov에서 "세금납부 선택 (tax payment options)"을 검색하면 다음과 관련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.
 - ─ 분할납부 계약─관련 양식을 다운로드 받거나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, 온라인 신청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
 - 귀하의 은행 계좌로부터 자동 이체
 - 급여로부터 자동 이체
 - 신용카드 납부

또 귀하의 선택을 논의하고자 하시면 IRS 1-800-829-0922 로 전화 하여 주십시오.

변경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

- 귀하의 계정을 검토하고자 하시면 1-800-829-0922로 전화하십시오. 우편으로도 연락이 가능합니다. 연락처 정보 부분을 작성한 후 분리하여 관련 통신문 또는 문서와 같이 송부하여 주십시오.
- 본 통보 일자로부터 60일 내에 서면으로 IRS에 연락을 취한 경우에 한해 귀하의 계정에 대한 IRS의 변경사항을 취소 처리할 수 있습니다. 단, 귀하가 변경 취소와 관련하여 합당한 추가 정보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, 귀하의 변경 취소 요청이 오류에 의한 것이라고 간주하고, 감사를 위해 귀하의 케이스를 이송할 것입니다. 이 단계에서 귀하는 정식 불복청구권을 갖습니다. 귀하가 추가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법정에서 IRS의 결정에 불복할 권리가 포함됩니다. 우리가 귀하의 케이스를 이송한 후 5 ~ 6 주이내에 감사 직원이 귀하에게 연락하여 감사 절차 및 귀하의 권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것입니다. 귀하가 이 60일의 기간 내에 IRS에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, 귀하는 세금납부 전 IRS의 결정에 대한 불복청구권을 상실하게 됩니다.

James & Karen Q. Hinds 22 Boulder Street Hanson, CT 00000-7253

통보	CP11
통보일자	2011년 2월 9일
사회보장 번호	999-99-9999

연락처 정보

INTERNAL REVENUE SERVICE KANSAS CITY, MMO 64999-0010 s018999546711s 귀하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, 1-800-xxx-xxxx 로 전화하거나 www.irs.gov 를 방문하여 주십시오.

□ 귀하의 통신문을 첨부하였으면 이 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. 모든 통신문에는 귀하의 사회보장번호 (999-99-999), 세무연도 (2009), 및 양식 번호 (1040)를 기재하여 주십시오.

	□ 오전 □ 오취	□ 오전 □ 오후	
주된 전화번호	통화 가능 시간	추가 전화번호	통화 가능 시간



통보번호	CP11
세무연도	2007 년
통보일자	2009년 3월 2일
사회보장 번호	999-99-9999
페이지 3/5	

___ 귀하가 즉시 취해야 할 조치**—계속** 변경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—계속

- 귀하가 60일 이내에 IRS에 연락을 취하지 않을 경우, 변경 사항은 취소 처리되지 않으며, 귀하는 추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. 그 다음에 귀하는 환급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 환급신청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한 날자로부터 3년 이내에, 또는 본 세금의 마지막 납부 일자로부터 2년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귀하로부터 별도의 연락이 없을 경우에는, 귀하가 본 통지서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최근 14일 이내에 귀하의 잔여 세금을 전액 납부했거나, 납부 협의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, 본 통지서를 무시하십시오.

귀하로부터 별도의 연락이 없을 경우

2011년 3월 2일까지 \$986.46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, 이자가산금이 늘어나며,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통보번호	CP11
세무연도	2007 년
통보일자	2009년 3월 2일
사회보장 번호	999-99-9999
페이지 4/5	

귀하의 2009 년 세금보고서 변경 사항

다음과 같은 이유로 세금 보고서상의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.

- IRS는 귀하의 납세자 구분을 변경하였습니다. 귀하의 세금 보고서 상의 정보를 근거로 한 귀하의 납세자 구분을 독신자(Single)로 하고 이를 이용하여 세액을 다시 계산하였습니다.
- 귀하의 세금 보고서상의 각 부양가족은 유효한 사회보장번호 (SSN) 또는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 (ITIN)가 있어야 합니다. 귀하의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의 성이 국세청 기록 또는 사회보장관리국 (SSA: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)에서 제공한 기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.

이에 따라, IRS는 귀하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세금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이러한 변경 사항은 귀하의 과세대상 소득, 세액, 또는 다음 공제 항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
- 자녀 및 부양자 탁아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
- 교육비 세액 공제
- 자녀 세액 공제
- 추가 자녀 세액 공제

귀하, 배우자 또는 귀하의 부양가족 중 누군가가 사회보장번호 (SSN)를 부여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, 국세청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 신청서인 W-7 양식(Form W-7)을 제출하여 국세청이 발급하는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 (ITIN)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번호를 이용하여 귀하의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고, 공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근로 소득 공제를 청구할 자격은 없습니다. W-7 양식을 얻고자 하시면 1-800-829-3676로 전화하거나, 웹사이트 www.irs.gov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

• IRS는 귀하의 근로 소득 공제액 (EIC)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귀하가 제시한 정보에 따르면, 근로소득 공제 명세서인 스케줄 EIC (Schedule EIC) 상의 자녀 중 1명 이상이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습니다.

귀하의 세금 계산

총 세금, 60번 줄	\$1,221.00	\$ 2,894.00
과세 대상 소득, 43번 줄	12,105.00	22,055.00
총 조정 소득, 37번 줄	\$31,405.00	\$31,405.00
내역	귀하의 계산	IRS 계산

			통보번호	CP11	
			세무 연도	2007년	
			통보일자	2009년 3월 2일	
			사회보장 번호 페이지 5/5	999-99-9999	
 귀하의 납부액 및 공제액	내역	.	페이지 5/5	 IRS 계산	
귀아의 답구의 및 중제의		 천징수세액, 61번 줄		\$2,140.00	
		조세 지불액, 62번 줄	<u> </u>	0.00	
		타 공제액, 63-67번, 69)번,	0.00	
	70	번 줄			
	납	부 및 공제 총액		\$2,140.00	
				뒷 면에 계속	
벌금	국세청	성은 법률에 따라 적용	용되는 모든 벌금을 누	부과하도록 되어	
	있습니	J다.			
미제출 날짜	연체 개월 수	미납액	벌금 부과율	벌금액	
^{르껙} 2010년 9월 15일	5	\$754.00	5.0%	\$188.50	
	 귀하 <i>9</i>	의 세금 보고서를 마침		 령우. 미납 세금에	
			5.0%, 또는 미납 세약	•	
	벌금이 부과됩니다. 세금 보고서의 제출기한이 2008년 12월 31				
	서가 60일 이상 지연 ⁵				
		,	00% 두 금액 중에서 7	•	
	•			수는 완전한 1개월로	
		날니다. (미연방국세남			
 벌금의 취소 또는 감면		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 나 가족 구성원의 사	망, 또는 자연재해로	
	인한 🤈	재무 기록의 분실과 [:]	같은 상황으로 납세지	· 가기한 내에 납세	
			수 있음을 이해합니다		
			l 벌금에 대한 취소 또 l 절차를 따르십시오.	돈는 감면을 고려해	
			『설사들 따드십시오. 를 원하는 벌금 항목을	확인하십시오 (예:	
			연 제출에 대한 벌금	•	
	대表	해 왜 귀하가 재고되여	거야 한다고 사료하는	지 그 이유를 설명해	
		되시오. 당의 지수 나에 나면 -	ᅵᅵᄀᅟᄀᅟᅵᆉᆒᆼᄉ	- 기 조 시 시 〇	
			ㅏ시고, 국세청에 우송 ㅂ그 강명 ㄸㄴ 칭ᄼ		
			벌금 감면 또는 취소. 용 여부를 통보해 드림		
IRS 가 제공한 서면상의 잘못된 조언으로	만약 -	귀하가 IRS 에서 제공	당한 서면상의 조언으	로 인하여 벌금을	
인한 벌금의 취소	부과 1	받았다면, 귀하가 다 [.]	음 조건에 해당될 경약	우 IRS 는 그 벌금을	
	취소할	취소할 것입니다.			
			대해 국세청에 서면상	·의 조언을 요청한	
	경약 ● 귀형		· · 정보를 국세청에 제	공하 경우	
			! '영모들 국제'영에 제 년상의 조언을 제공받		
			18의 조선을 제공된 3의 조언을 신뢰하였		
		하여 벌금을 부과 받은		<u> </u>	
			_ ᆼㅜ 도언으로 인한 벌금에	대한 취소를	
	11.0 =			·· - 11—- =	

요청하려면 환급 청구 및 감면 요청서(Claim for Refund and Request for Abatement) (양식 843)를 귀하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한 국세청 서비스 센터로 제출해 주십시오. 해당 양식의 사본이 필요하거나, 귀하의 국세청 서비스 센터를 찾고자 할 경우, www.irs.gov 를 방문 하거나 1-800-829-0922 로 전화 하여 주십시오.

뒷 면에 계속...

이자 가산금

국세청에서는 법률에 따라 세금 보고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세금 완납일까지의 미납 세금에 대한 이자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. 이자 가산금은 해당되는 벌금을 포함해 미납 세금이 있는 한 부과됩니다. (미국세법 제6601항)

기간	일수	이율	이율요소	납부해야 할 세액	이자 가산금
2010/04/15-2010/06/30	76	6.0	0.012535919	\$942.50	\$11.82
2010/06/30-2010/09/30	92	5.0	0.012646750	954.32	12.07
2010/09/30-2010/12/31	92	6.0	0.015195019	966.39	14.68
2010/12/31-2011/02/09	40	5.0	0.005494114	981.07	5.39

이자 총액

\$43.96

미납세금, 벌금 및 이자(납부해야 할 세액)에 이율요소를 곱해 각 분기별이자 가산금이 결정됩니다.

추가 정보

- www.irs.gov/cp11을 방문 하십시오.
- 세무양식, 작성요령 및 간행물이 필요한 경우, www.irs.gov를 방문 하거나 1-800-TAX-FORM (1-800-829-3676)로 전화해 주십시오.
- 전자 신고를 이용하여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셨습니까? 온라인으로 제출한 세금 보고서의 경우, 본 통지서와 같은 계산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적습니다. 전자세무신고는 무료입니다. 이에 대한 안내 및 이용지침은 www.irs.gov/efile을 참조하십시오.
- 본 통지서는 귀하의 기록서류로 보관하십시오.

IRS는 본 통지서의 사본을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 모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각 사본은 귀하의 공동 계정에 관한 동일한 정보를 포함합니다. 주의: 납부해야 할 세액은 단 1회만 납부해 주십시오.

도움이 필요할 경우, 주저하지 마시고 국세청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.